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조례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 변경
- 다. 녹색제품의 정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 변경(안 제2조)
- 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조항 폐지(안 제5조~제9조) :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 마.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기한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안 제11조)
- 바.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주체가 시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된 사항과 구매실적 집계 사항 관련내용 정비(안 제12조)
- 사.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정비(안 제15조)
- 아. 교육훈련 지원기관 변경(안 제16조)
- 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3) 「환경정책기본법」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5)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6)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조 례 안 : 붙임

라. 합 의 :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마. 기 타 : 없음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를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을 ““구매이행계획”이란”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매실적”이라 함은”을 ““구매실적”이란”으로, “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계획”을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을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대상범위)”를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시작전까지”를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위”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다음”을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을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접구매”를 “간접 구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

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유가있다”를 “이유가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호 내지”를 “법 제6조제1호부터”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친환경상품’을 “다른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을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제15조제1항제4호 중 “등급제품”을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심의를 거쳐위원장”을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내”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내”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계

제20조제2항 중 “관계기관·단체의장과친환경상품”을 “관계기관·단체

의 장과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단체등이 친환경상품”을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수있다”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항목에 친환경상품”을 “시 녹색제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포상 할”을 “포상할”로 한다.

제2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 ----- 녹색제품-----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조제 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녹색제품-- ----- ----- -----.

3. “<u>구매이행계획</u>”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u>구매실적</u>”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u>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계획</u>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u>관내기업</u>”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u>자발적 협약</u>”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3조(<u>다른 법률과의 관계</u>) 법 및 <u>같은법</u>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u>적용대상범위</u>)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3. “<u>구매이행계획</u>”이란----- ----- ----- <u>녹색제품</u>----- -----. 4. “<u>구매실적</u>”이란----- ----- - <u>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u>- -----. 5. “<u>관내기업</u>”이란----- ----- -----. 6. “<u>자발적 협약</u>”이란----- ----- ----- <u>녹색제품</u>----- ----- ----- ----- -----. 제3조(<u>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u>) ----- <u>같은 법</u> ----- ----- ----- -----. 제4조(<u>적용대상 공공기관</u>) ----- -----
--	--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규정에 의거 설립한 공단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 의원, 시 공무원과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

1. -----
----- 따른 -----

2. -----
----- 따라 -----

<삭 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
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
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
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안전과장이 맡는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제3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판매·홍보 등 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행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 녹색제품-----

-----.

② -----
-----.

1. 녹색제품-----

2. 녹색제품-----

3. ----- 녹색제품-----

4. ----- 녹색제품-----

5. ----- 녹색제품-----

③ ----- 녹색제품-----

-----.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수립·공표한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따라 ----- 녹색제품-- -----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 녹색제품-- -----.

② -----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

③ ----- 녹색제품-- ----- 지체 없이 -----.

④ -----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 공표한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

----- 관련 자료-----
-----.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
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
매하는 경우

3. (생 략)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이 친환
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
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제고 부족 등
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

-----.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

----- 다른 시장의 녹색제품-

-----.

1. (현행과 같음)
2. -----
----- 간접
구매-----

3. (현행과 같음)

제14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

----- 녹색제품-----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
색제품-----

2. -----

----- 이유가 있다-----

3. 녹색제품-----

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② ----- 법 제6조제1호부터-

----- 녹색제품-----

-----.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따른 ‘녹색제품- -----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

<삭 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
표시인증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
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
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
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
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
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
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
품

4. -----
----- 1등급제
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 따른 -----

--

② -----
----- 녹
색제품 -- -----

-----.

③ -----

----- 제1항의 위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생략)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 녹색제품 -----

-.

제16조(교육훈련) ① ----- 녹색제품 -----

-----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
----- -.

② -----

-----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4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행정지원 확대) -----
----- 녹색제품 -----

----- 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녹색제품-----

-----.

② ----- 녹색제품-----

-----.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
--- 녹색제품-----

----- 제공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 녹색제품-----

수 있다.

1. 관내에서 자본금의 50%이상
을 출자한 공기업

2. 관내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 5. (생략)

6. 산업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
관·단체의장과친환경상품 구
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
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단체등이 친환경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
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
나 행정지원을 할수있다.

제21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업
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시-----

2. 시-----

3. ~ 5. (현행과 같음)

6. 산업계

② ----- 관계기
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

-----.

③ ----- 관련단체 등이 녹색
제품-----

----- 행정지원을 할 수 있
다.

제21조(기관 평가) ① -----

----- 시 녹색제품-----
----- 평가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u>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u> 제22조(포상) 시장은 <u>친환경상품</u>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u>포상</u>할 수 있다. 제23조(사무분장) <u>친환경상품</u>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제22조(포상) ----- <u>녹색제품</u>----- ----- ----- ----- ----- <u>포상</u>할 -----. 제23조(사무분장) <u>녹색제품</u>----- -----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3조 관련)

1.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환경안전과】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환경안전과로 제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환경안전과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 포함)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 · 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 자재 사용 등
 - 시설 · 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 · 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호 생략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항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호 생략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15호 생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호 생략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9호 생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① 환경기술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 지원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7.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9.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10.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11.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3.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항 생략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항 생략

□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나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과 실·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담 당 관	문 경 원
	담 당	김 종 부
	담 당 자	손 준 호 (480-5254)